

'90 家畜検診事業(次年)

- ① 절소의 결핵病 및 부드세라病 檢診
- ② 實施期間 : '90. 3. 1 ~ 11. 30
- ③ 實施機關 : 保健環境研究院
- ④ 實施財源
 - 結核檢診 : 절소 500 頭
 - 부드세라 : 절소 100 "

분류기호 문서번호	농축 27465- <i>A7</i>	기 안 용 지 (전화: 773-2678) 특별취급	시 행 상 장
보존기간	영구·준영구 10. 5. ③. 1.	<i>Y90</i> -	
수신처 보존기간	3년		
시행일자	'90. 2. 11.		
보 조 기 관	산업경제국장 농축과장 가축위생기관	협 조 기 관	문 서 류 제 작 동 체 관 1990. 2. 15. 1991. 2. 15. 발 송 증 1990. 2. 15. 서울특별시
기안책임자	국장(권역부)		
경 우 수 신 참 조	각 안 참 조	발 신 명 의 고시 승인 1990. 2. 15. 제 460	
제 목	'90 가축검진 사업실시		

(제 1 안) 내부결재

'90년도 우리시 가축방역 사업의 일환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것을 막기 위하여 관내에서 기르는 절소에 대한 검진사업을 실시하고자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안과 같이 고시하고 각안 시행보조합니다.

첨부 고시문 1매. 끝.

(제 2 안)

수신 보건환경연구원장

참조 축산물부장

제목 같은건

'90년도 우리시 가축방역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고시문과 같이 검진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였

으니 본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첨부 고시문 1부. 끝.

(제 3 안)

수신 농림수산부장관

참조 가축위생과장

제목 같은건

'90년도 우리시 가축방역 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별첨 내용과 같이 가축검진사업 실시를

고시하였기 보고합니다.

첨부 고시문 1부. 끝.

(제 4 안)

수신 수신처참조

참조 산업과장

제목 같은건

'90년도 우리시 가축방역사업계획의 일환으로 별첨 내용과 같이 가축검진사업 실시를

고시하였으니 귀 관내 첫소 사육축주에게 검진을 받도록 계도하여 본 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첨부 고시문 1부. 끝.

수신처 서구 1-22.

(제 5 안)

수신 서울특별시수의사회회장

제목 같은건

'90년도 우ти시 가축방역사업계획의 일환으로 별첨 내용과 같이 가축검진사업 실시를
고시하였기 알려 드립니다.

첨부 고시문 1부. 끝.

(제 6 안)

수신 공보관

발신 산업경제국장

제목 같은건

'90년도 우티시 가축방역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가축검진사업 실시를 위하여 별첨 내용
을 고시하고자하니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이며 동 내용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고시문 3부. 끝.

1103	진자	1990.2.	제 2	호
담당자	필재	상장	부서장	장

서울특별시 고시 제 46호

고 시

가축검진사업 실시

서울특별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내에 기르고 있는 젖소에 대한 검진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1990. 2. 15.

서울특별시장

1. 목 적 : 가축전염병의 만연을 방지하고 축산업 발전 및 인수공통 전염병 근절에 기여함
2. 지 역 : 서울특별시
3. 내 용 : 젖소의 결핵병 및 부루세라병 검진
4. 실시기간 : '90. 3. 1 ~ 11. 30
5. 실시방법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가축방역관과 공수의에게 위촉 실시
6. 실시대상
 - 결핵병 : 젖소1세이상 전두수
 - 부루세라병 : 착유하는 젖소
7. 기타사항 : 검진결과 양성 및 의양성 젖소가 발생 되었을때는 농림수산부 예규 제132호에 의거 조치

가축전염병 예방법 발췌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검사, 주사, 약육 또는 투약의 실시)

1) 도지사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축의 소유자에게 가축에 대하여 검사, 주사, 약육 또는 투약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으며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관리 수의사를 두게 할 수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3조(검사, 주사, 약육 또는 투약이 실시명령등)

1)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에 대한 검사, 주사, 약육 또는 투약의 명령을 하거나 농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축, 종계 및 시설에 대한 정기 검사의 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검사, 주사, 약육, 투약 또는 정기검사의 실시일 10일전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그로하지 아니 하다.

1. 목적
2. 지역
3. 대상 가축명과 질병의 종류
4. 실시기간
5. 기타 필요한 사항